|  |  |  |
| --- | --- | --- |
| **카카오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서** | | |
| **계**  **약**  **자** | **발 주 자**  **“고 객”**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 **계약 상대자**  **“LG CNS”** | **상 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대표자** : 김 대 훈 |
| **계**  **약**  **내**  **용** | **계 약 명** | **카카오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
| **계 약 기 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
| **기 타** |  |
| “고객”과 “LG CNS”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계약(Payment Gateway)’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류 : 1. 계약조건  2. 이용신청서    201 년 월 일  “고객” “LG CNS”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대표이사 김 대 훈 | | |

**붙임 서류1.**

**계 약 조 건**

\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카카오페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쇼핑몰(이하 여타 유료서비스 포함)에서 상품(이하 ‘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을”이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카카오페이서비스”라 함은 “갑”이 “갑”의 “이용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을”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뜻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상품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서비스”를 “갑”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용카드의 이상유무를 “갑”이 “을”에게 요청하고, “을”이 동 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로 전송하여 거래승인 또는 거래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⑤ “매입 청구” 또는 “EDI청구”라 함은 “을”이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에 대해 “을” 또는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이하 “매입 카드사”라 함)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정산”이라 함은 “을”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갑”에게 매입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⑦ “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을”과 “결제기관”과 연결된 전산기기 시스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⑧ “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갑”이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을”이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및 “매입 청구” 하고, “을”은 동 매입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갑 ”의 책임과 의무)**

① “갑”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의 거래내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③ “갑”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쇼핑몰”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의 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

② “을”은 “카카오페이”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③ “을”은 “카카오페이”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카카오페이”에 관한 “이용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제 5 조 (대금정산)**

① “을”은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에서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전 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③ “을”은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금 정산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갑”과 ”을”은 “카카오페이”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제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갑”이 "카카오페이" 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을” 은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갑” 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 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 “갑”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을”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⑨ “을”은 “이용자”의 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⑩ “을”의 지불승인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6 조 (이용자 민원의 처리)**

① “갑”은 “카카오페이” 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이용자”와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의 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카카오페이”이용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갑”은 “을”이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④ “갑”이 “이용자”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카카오페이”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또는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① “을”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갑”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승인제한)**

① “을”은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결제기관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제 9조 (거래정보의 제공)**

① “을”은 해당기관(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거래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갑”은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 과정에서 “을”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을”에게 제출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전 1,2항과 별도로, "을"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갑"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 10조 (손해담보물 제공)**

① “갑”은 본건 “카카오페이”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험금액: 일금 \_\_\_\_\_\_\_\_\_\_\_\_\_\_원 ( \\_\_\_\_\_\_\_\_\_\_\_\_\_ )

②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카카오페이”이용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③ “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신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제 11 조 (소유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카카오페이”의 모든 구성요소(카카오페이 모듈을 포함)는 “을”의 소유(지적재산권 포함)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서면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이나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 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 등 도산절차를 개시한 경우

4)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경우

③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14일 전의 최고를 통해 그 시정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2)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집단행동 등 노사문제 발생으로 계약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갑”은 계약해지 후 “카카오페이”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을”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후에도 거래 취소 등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서 제5조, 제6조의 효력은 “카카오페이” 이용계약의 해지 시에도 “이용자”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⑦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중지)**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1)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갑”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갑”이 특별한 사정 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갑”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4) 기타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전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을”은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상대방(제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사유발생일 이후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카카오페이”서비스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을”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갑”이“ 카카오페이”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① “을”은 본 계약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이용자”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의 직원 및 피용자에게 보안유지서약서(고객정보유출 금지 및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 유출 금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징구한다.

② “을”은 “개인정보”를 취급, 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을”의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시/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을”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같은 “갑”의 “개인정보” 관련 수검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상 업무 수행 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개인정보 관련 각종 고시/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밀 유지)**

① “갑”과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갑”의 고객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본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정산주기 등 계약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 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정보이용의 장애나 상대방으로부터 파생된 문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③ 제 2항의 경우 “을”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총액은 본 계약 발효 일로부터 매 1년 단위 기간 중 “갑”의 “을”에 대한 월평균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제 19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 내용의 수정이나 계약 연장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20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 년 월 일

**붙임 서류2.**

**카카오페이 이용신청서**

**1. 사업자 및 가맹점 정보**

|  |  |  |  |
| --- | --- | --- | --- |
| 상호명 |  | 사업체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대표자생년월일 |  |
| 업태 |  | 종목 |  |
| (우편번호)주소 |  | | |
| 홈페이지 URL |  | 매입요청 | 자동 |
| 서비스방식 | 결제대행서비스 | 결제연동방식 | 카카오페이 |
| 정산은행명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

**2. 서비스 이용조건**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신청 | 수수료율  (VAT별도) | 정산주기 | 비고 |
| 결제수단 | 신용카드 | Y | 3.5 % | 결제일로부터 7영업일 |  |
| 계좌이체 | N | % |  |  |
| 가상계좌 | N | 건당 원 |  |  |
| 휴대폰결제 | N | % |  |  |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 N |  |  |  |
| 에스크로 | N |  |  |  |
| 초기비용 | 초기등록비 | 300,000 원 | | 면제 |  |
| 연관리비 | 300,000 원 | | 면제 |  |
| 구비서류 | 공통 | 계약서2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통장사본1부 | | | |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 | | |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인감증명서1부, 대표자주민등록등본1부 | | | |

**3. 담당자 정보**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이름**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 **실무책임자** |  |  |  |  |  |
| **개발담당자** |  |  |  |  |  |
| **정산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용)** |  |  |  |  |  |